

# 정보화시대에서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최선경\*

In the information age,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n-Koung Choi\*

요 약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집단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current adult guidance system from an angl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 sudden changed information age. Through it, this research intends to seek improvement of adult guardian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ain group of the system, from an angle different from the aged. It focuses on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for the significance of adult guardian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are weak for self-decision. Furthermore, for the improvements, this system should be able to b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ties through the using internet in the cyber space.

키 워드

Developmental Disabilities, Guardian, Adult Guardian System  
발달장애, 후견인, 성년후견제도

## 1. 서 론

오늘날의 정보화시대는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이루어내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

의 질 향상과 관련된다. 즉, 정보교류를 통한 커뮤니티의 형성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커뮤니티 형성은 IT시대에서 보다 활발히 논의될 수 있다.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sun@silla.ac.kr)  
접수일자 : 2014. 01. 27

심사(수정)일자 : 2014. 03. 21

게재확정일자 : 2014. 04. 11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지원 장치를 말한다[1].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결성되면서 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에 현 민법상의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들을 위한 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2-9]. 성년후견제도의 실현은 장애인복지이념이 추구하는 ‘자기결정권’ 이념의 연장선상에 있다[10]. 주목해야 할 점은,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스스로 지정하는 등의 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느냐에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에 있어서 가족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돌봄 부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가보호 차원의 책임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정보교류와 제도개선을 위한 가상공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및 도입배경과 주요 쟁점

### 2.1 이념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란 지적장애와, 자폐증 장애를 총칭하는 정의를 쓰고 있다[11].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둔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한 문제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망, 노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장애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그들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다. 이 질문 안에는 ‘그들의 자녀가 어디에 살 것인가’,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자녀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비장애자녀가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까’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장애자녀의 부모와 비장애자녀, 다른 가족구성원 모두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한다[12].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부모사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어왔다[13-16].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평생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도 스스로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17].

### 2.2 도입배경

기존 우리나라 민법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치산제도 및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계를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금치산자는 “심신상시”를 실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본래 민법상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부족한 재산상의 행위능력을 보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무능력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실익이 없으며, 대상자의 판단능력, 보호의 필요성의 수준은 다양한데 반해 금치산 한정치산 2개의 유형만을 인정하는 경직된 제도로 인해 정신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에 합당한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18]. 이러한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는 판단능력을 상실하거나 불충분한 자를 획일적으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재산 관리에만 치우쳐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무능력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 등의 이유로 인권 침해적 상황 등이 대두되었다[1]. 이는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라는 법정요건 때문에 고령자 등 이에 준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며 특히, 친족회가 후견감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나 제제가 어려운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4],[19].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를 말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첫 걸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그 동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지고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착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 대책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과제가 되었다[8]. 이와 더불어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즉, 서비스 시혜 대상에서 소비자 주권주의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행위능력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본인의 잔존능력의 활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조차도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9]. 만약, 발달장애인이 무능력자제도를 활용한다면, 발달장애의 특성상 경도부터 중도 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이런 경우 획일적인 제도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령자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정치산·금치산의 심판 절차에 있어서 실무상 사건 본인의 가족들은 참고인으로 참여 할 수 있었으나 사건의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20]. 이는 인권 문제의 위험이 있다. 판단능력이 감퇴된 자나 행위능력이 제한된 고령자도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였다. 이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무능력자제도 및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거의 행사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피후견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들이 노정되어왔다. 또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무능력자 제도를 두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는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 2.3 개정된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입법내용 및 쟁점

정신적 능력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이용대상자 및 범위를 넓히고, 후견의 유형과 내용을 다양화하였다[22]. 첫째,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의 유형을 다원론적 입장을 취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로 구분하였다. 이는 범주적 유형적 보호에 수반되는 획일적 보호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요보호 성년자의 개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최적의 개입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잔존능력의 활용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원적 구조의 장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둘째, 성년후견의 적용 대상으로 개정안은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한정후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개정안 제12조),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성년후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개정안 제9조). 또한 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는 특정후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개정안 제14조의 2).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대상이 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용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안 제 13조, 제 10조). 셋째,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피성년 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940조의 4).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도 후견인이 혈족이 아닌 전문후견인이 돌보는 것이 필요한 관점에서 개정안은 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근친자 중심의 법정후견인을 폐지하고 적임자를 직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수 후견인, 법인 후견인의 선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930조 제2항, 제3항). 넷째, 후견인이 혈족이 아닌 전문후견인이 돌보는 것이 필요한 관점에

서 개정안은 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근친자 중심의 법정후견인을 폐지하고 적임자를 직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수 후견인, 법인 후견인의 선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930조 제2항, 제3항). 다섯째, 민법개정안에서는 현행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하였다(개정안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해당하고,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해당하며,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한다. [9],[18],[21].

### III. 일본·독일·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특징

일본, 독일, 프랑스는 성년후견제도를 일찍이 시행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 3.1 일본

개호보험의 실시와 함께 2004년 성년후금치산 및 준금치산 제도가 실시되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금치산 및 준금치산 제도,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한 후견 및 보좌제도는 경직적이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성년후견제도는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노멀라이제이션 등의 새로운 이념을 확립하고, 종래의 본인 보호 이념과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24].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구성하는 법률은 4개이며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임의 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시행에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제도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후견, 보좌, 보조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후견은 정신상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식할

능력을 흠결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개시된다(일본 민법 제7조). 판단능력을 결여한 자는 스스로 거래행위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리할 자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성년피후견인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리하게 하고, 동의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행동하는 것은 아니한다[3]. 이전의 금치산 및 준금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혼자서는 거래 등을 할 수 없는 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로 재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을 원조하는 후견인 및 보좌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였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본인이 혼자서 행한 행위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모두 취소할 수 있었으며,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본인을 대신하여 필요한 법률행위를 실행할 때에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었으며, 동의를 얻지 않고 실시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건 등이 어려워 실제로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무엇보다 ‘금치산 및 준금치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제도의 개선이 계속해서 요구되었다[3].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신상감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 등은 그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본인의 심신상태 및 생활상황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일반적 규정을 두었다(일본 민법 제858조). 또한 본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일본 민법 제859의3).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성년후견감독인, 보좌감독인, 보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49조의 2, 제876조의 3, 제876조의 8)[25].

#### 3.2 독일

1970년대 초부터 독일에서는 종래의 행위무능력제도 및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의 개념을 촉구하는 소리가 표면화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관계자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90년 6월 1일에 마침내 개정법이 성립되었고, 1992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성년후견법이 시행되었다[26]. 독일은 과거 행위능력박탈제도에서 오랫동안 많은 법 정책적 비판을 받아왔다. 즉 동 제도는 차별적

이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자도 스스로 일상의 거래 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능력을 완전히 상실케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나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시행 당초부터 고비용의 문제 등이 야기되자, 재정부담완화를 위한 재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1998년에 제정되어 1999년에 개정안이 시행되었다[27]. 독일의 개정법은 피후견인이 일반적·추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피후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사무가 중요한가를 특정해야 한다. 규제해야 할 사무는 피후견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그 결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피보호인의 생활상태가 어떠한가, 또한 지금까지의 피후견인에 대한 보호는 어떠한가를 확인하는데, 이 때 의학적인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28]. 또한, 피후견인은 독립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는 당사자가 성년후견인을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긴급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후에 감정 받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민사소송법 제406조와 관련된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에 의해서 감정인의 중립성 증명에 불신이 있거나 감정서의 편견의 우려가 증명된 경우 등의 일련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이 거절되거나 혹은 감정서가 취소될 수 있다(독일민사소송법제42조)[29].

### 3.3 프랑스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는 1804년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이 시행된 이후 1838년 6월 30일 법률(loi de 3 janvier 1968)에 따라 일부 정비되어 유지되어 오다가[22], 1968년에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개정법은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특별보호제도 역시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였다[3]. 정신적 능력이 질병, 병약, 고령에 의해 감퇴한 경우 및 신체적 능력이 의사의 표현을 방해할 정도로 감퇴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제490조)[4]. 그 이후 40년이 지난 2007년 3월 5일 법률에 의해 전면적인 개혁이 있었다. 2007년 개정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1968년 체제의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기본 틀인 후견(tutelle), 보좌(curatelle), 사법적 보호(sauvegarde de justice)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성, 보충성,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1]. 1968년 개정법의 성년후견제도의 확대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 필요성의 원칙을 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은 검사 작성의 명부에서 선정된 전문가가 발급한 의학적인 단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고(2007년 프랑스 민법 제431조), 기존의 보호 사유였던 ‘낭비, 무절제, 게으름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거나 위태롭게 할 염려’는 더 이상 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개시사유가 아니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대리,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부부재산제, 딸 구속적인 재판상 보호조치, 장래보호위임계약 등에 의한 보호가 성년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후견과 보좌가 선고된다(제428조 제1항). 즉 후견은 사법보호와 보좌가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고(2007년 프랑스 민법 제440조 제2항, 제4항), 보좌는 사법보호가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다. 셋째, 비례성의 원칙은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심신의 손상정도에 따라 비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라고 명문화되었다(2007년 프랑스 민법 제428조 제2항). 따라서 2007년 개정법에서는 낭비, 무절제, 게으름 등을 보호조치의 개시 사유에서 배제하였고, 장래보호위임계약 등에 의해서 보호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강제성이 강한 보호조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후견인의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보호의 방식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각 유형의 내용을 탄력화 했다[1].

## IV. 결론 : 발달장애 영역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개선방안

기존의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는 고령자나 장애인인 성년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새로운 피보호성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등장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30].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정상화이념과 자기결정권존중, 존중능력의 활용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결국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

권존중을 법적으로 명시한 인권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것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의 기초가 된다[31].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제도 역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중심으로 돌봄의 객체가 아닌, 서비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성년후견인제도의 중요한 의의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견인이 인권의 민감성을 가지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서비스 과정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윤리강령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후견인 양성에 있어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둘째, 법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인생의 오랜 기간을 자기결정권의 제한 속에서 살아왔고,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곧, 후견인제도가 오히려 인권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법적으로 악용되어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사생활 모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어느 부분에서 그의 능력을 보충하는 제도라는 분명한 인식이 요구된다.

셋째, 후견제도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주부양자가 성인자녀의 후견인 제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이 발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사회적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교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한다[32].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공동체는 성년후견제도의 의미와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유용한 사회적 장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D. Kim, "A study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3.
- [2] D. Kim, "A study of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status of the Disability Adult-Guardianship System by parents who are raising mentally disabled children,"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2009.
- [3] H. Kim, "A study on a desirable direction in the legislation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2009.
- [4] W. Kim,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PhD's thesis, Dong-Eui University*, 2005.
- [5] M. An, "A Study on Legalization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2008.
- [6] S. An, "A study of New Guardian Ship System in Civil Law,"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2010.
- [7] H. Jo, "A study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1.
- [8] S. Koo, "An Analysis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under the revised civil code," *PhD'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9] J. Choi, "A Study on Training of the Guardian under the Revised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2012.
- [10] S. Jo,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08.
- [11] M. Jeong, H. Yang, S. Nho, and J. Hyun, *Social welfare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Jeongminsa, 2013, pp. 76-87.
- [12] M. Kim, "A Study on Permanency Planning of Children with the Mental Retardation Autism,"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2012.
- [13] N. Seo, "A Study on Permanency planning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 For the parents of Seoul and Kyunggi-do area,"

-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2009.*
- [14] M. Seo, "Permanency Plan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 Focused on Mental Health System of New Zealand," *Korean J. of social welfare*, vol. 58, no. 2, 2006, pp. 22-32.
- [15] J. Son, "A study on lifetime plans for offsprings of parents for the feebleminded children,"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2007.*
- [16] H. Eun, "A study on the mentally retarded children's lifelong plan : Focused on the parents of a school for the handicapped in Seoul," *Master's thesis, Kunkuk University, 2002.*
- [17] H. kim, *Understand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2, pp. 29-32.
- [18] T. Yun, "A Study on employee recognition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facilities for handicapped : Focusing on employee in Chungcheongnam-do facilities for handicapp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3.*
- [19] J. Woo, "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Law System for the Disabled," *Chung-Ang Law Review*, vol. 10, no. 4, 2008, pp. 201-216.
- [20] Y. Shin, "The guardianship system in an aging society," *J.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vol. 27, no. 11, 1997, pp. 360-370.
- [21] H. Jo, "A study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1, pp. 38-50.*
- [22] I. Bae, "A Study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arising ou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3.*
- [23] I. Park, "A Study o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vol. 24, no. 1, 2010, pp. 68-74.
- [24] M. Kim, "Japanese trends and challenge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 Labor Brief*, vol. 8, no. 6, 2010, pp. 64-79.
- [25] H. Oh, "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laws in Japan," *Law Review*, vol. 27, no. 3, 2007, pp. 7-30.
- [26] Y. Park,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isty, 2007.*
- [27] S. Baek, "A comparative Study on de lege ferenda of Care and Control System,"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vol. 15, no. 2, 2005, pp. 13-33.
- [28] Y. Lee, "A Study on the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hD'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7.*
- [29] K. Hong, "Betreuungsgesetz and Betreuung in Germany," *Latest ForeignLlegislation Information*, vol. 2, 2008, pp. 18-20.
- [30] G. Yoo, "A Speculation on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Law Review*, vol. 24, 2006, pp. 50-63.
- [31] S. Baek,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elf-determination," *Comparative Law Research*, vol. 1, 2000, pp. 291-293.
- [32] S. Choi, "Improvement plan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for improving Web accessibility or visually impaired,"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0, 2013, pp. 1523-1528.

## 저자 소개



### 최선경(Sun-Koung Choi)

2001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석사)

2006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박사)

2007년~현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 정보접근권,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